

# 생활체조위원회 운영규정

2021. 08. 27.



제 정: 2016. 12. 28  
개 정: 2021. 08. 27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근거 및 목적)** 이 규정은 대한체조협회(이하 “협회”) 정관 제37조 ①항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생활체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생활체조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생활체조의 진흥방법에 관한 사항
3. 당해 종목에 관한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4. 당해 종목대회의 개최 및 주관에 관한 사항
5. 체조스포츠지도사(1·2급 생활체조, 유소년체조, 노인체조) 자격검증 시행 사항
6. 시·도 체조협회의 생활체조 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
7. 기타 협회의 위임사항 및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
##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

**제3조(위원회 구성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명
2. 부위원장 1명
3. 위원 7명 이상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### 제4조(위원의 위촉)

- ① 위원장(위원 포함)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1.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  2.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직 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  
다만,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.
  3. 위원은 능력, 경험, 기여도, 소속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  1. 협회, 시도체조협회 및 체육회(시도체육회 포함)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
  2. 협회, 시도체조협회 및 체육회(시도체육회 포함)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
- ④ 정관 제26조에 해당하는 사람

### 제5조(위원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## 제6조(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(단,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).
-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7조(위원의 해촉)**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## 제8조(회의의 소집 등)

-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부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, 소집 3일전까지 심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한다.
- ② 재적위원 과반수가 제2조 사항과 관련하여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9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**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.

**제10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**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11조(제척 및 기피)**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12조(경비의 지급)** 정관 39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 ·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 (2016. 12. 28)

## 제1조(시행일)

- ① 이 규정은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은 협회와 통합 종목으로서 금회에 한하여 특수성을 인정하여 시행하고

추후에는 현행 협회의 정관과 위원회 구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 (2021. 08. 27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